##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77

발의연월일: 2021. 4. 22.

발 의 자:인재근・이장섭・최종윤

양정숙 · 홍성국 · 김영진

서영석 · 이해식 · 소병훈

양이원영ㆍ허 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6조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 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
	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약국
	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
	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6조제3항
	<u>• 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u>
	조제1항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공 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